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동현의원 (찬성자 10명)

나. 의안번호 : 제 1541 호

다. 발의일자 : 2020. 5. 25.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제안이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분리·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도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 다.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
- 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규정하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제정(16.5.29)·시행(17.5.30)됨에 따라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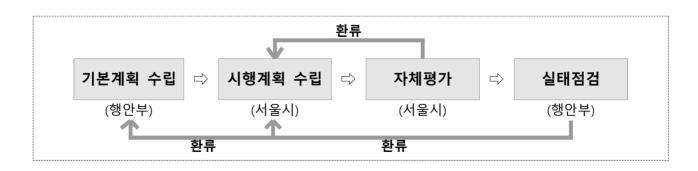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꼬군걸	구프 글시
안 제1조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안전 교육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시장에게 안전교육진흥 정책의 수립, 지원,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자치구별 균등한 교육기회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 토록 함.
안 제4조	시장에게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시장에게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토록 함.
안 제6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
안 제7조	시장에게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
안 제8조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 안전문화를 증진토록 노력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함.
안 제9조	시장에게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교육 프로 그램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함.

안 제10조	시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시장에게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활용,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 등의 사항에 대해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토록 함.
안 제12조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부 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토록 함.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53조(안전교육), 제54조(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추진 현황

○ 서울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민 안전교육과 관련해 추진방향, 전년도 추진성과, 분야별 안전교육 추 진계획, 재원 등 연도별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실 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1]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관련 추진 절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생활안전, 교통 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총 6개 분 야, 50개 세부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총2,987,980명1)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임.

[표 2] 시민안전 교육 분야별 현황

분야	영역	세부영역
	시설안전	①다중이용 시설안전, ②승강기안전
	화재 안전	③화재예방, ④화재대피, ⑤화재진압
1. 생활안전	전기·가스안전	⑥전기안전, ⑦가스안전
	작업안전	⑧작업환경안전
	여가활동안전	⑨수상안전, ⑩캠핑안전
	보행안전	⑪교통법규안전, ⑫횡단보도 이용안전
	이륜차안전	⑬자전거안전, ⑭오토바이 안전
2. 교통안전	자동차안전	⑤교통사고대처, ⑥안전띠착용
	대중교통안전	⑪승하차안전, ⑱탑승중 안전
	재난대응	⑲재난정보, ⑳재난대피, ㉑재난시 구호활동
3. 자연재난 안전	기후성재난	②홍수, ③태풍, ④황사, ⑤대설·한파, ⑯폭염, ⑦가뭄
	지질성재난	8 지진, 9 산사태
4. 사회기반 체계안전	환경·생물· 방사능 안전	⑩환경오염
	폭력안전	③)학교폭력, ②언어·사이버폭력, ③3가정폭력, ④)학대
5. 범죄안전	유괴·미아방지	ⓑ 유괴·미아방지 및 대처
[5. 함의한신	성폭력안전	☞성매매방지, ☞성폭력예방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
	식품안전	⑩식중독, ⑪유해식품안전
6. 보건안전	중독안전	⑫약물안전, ⑭물질중독, ⑭흡연·음주 폐해, ⑮사이 버·스마트폰 중독
	감염 안전	⑥감염병 대처
	응급처치	⑪심폐소생술(AED포함), ⑱응급구조, ⑲상황별응급처치
	자살예방	⑩자살예방 및 대처

¹⁾ 합계: 2.987.980명

(2018년 안전교육 이수인원 1,326,206명, 2019년 안전교육 이수인원: 1,661,774명)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면 서 별도로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 생각되나 본조 제1항은 '법 제2조의 정의(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를 따르도록 하면서.

[표 3] 상위법령과 본조례안 조문대비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과 같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 인식하고 지진, 화재, 해상사고, 감염병 등의 각 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본조 제2항 '안전교육'의 정의에는 법 제2조제1호의 '안전교육'의 정의와 다르게 '~~*지진, 화재, 해상사고, 감염병 등의~~*'만을 추가해 새로이 정의함으로서 해석상의 충돌이 우려되는바 상위법령 의 체계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4]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고 지진, 화재, 해상사고, 감염병 등의 각	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
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u>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u>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
	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u>사람을 말한다.</u>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시민안전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는 한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책무와 노 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여기서,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5] 상위법령과 본조례안 조문대비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 조례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 조례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
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
	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설되는 안 제3조제4항은 시장에게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하면서 제5항에 서는 시장에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갖추도록 노 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 이는 안전교육이 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있도록 교육 및 전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사료됨.

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시장에게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교육시행계획에는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안전교육의 추 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안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세부 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됨.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에게 협조요청이 가 능토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8조²)의 조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요청받은 자가 사유를 달아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됨.

^{2) &}lt;u>「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마.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 및 포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7조의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 중 제1호는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³)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정하고 있고.
 - 안 제8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의 경우 역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4)에서 동

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 · 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⁶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 ⑤ 〈생략〉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와의 동일한 현행 체계 유지를 위해 안 제7조제1호와 안 제8조는 삭제 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표 7]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
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u><삭 제></u>
<u>2.</u>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1.</u> (조례안과 같음)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u>2.</u> (조례안과 같음)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u>3.</u> (조례안과 같음)
지원	
제8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시민	<삭 제>
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	
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의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u>있다.</u>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	
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안 제9조)

- 안 제9조는, 시장에게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등한 안전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보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링」제10조제1항5)에 따른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연결성을 가진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관련 기관들의 연구 및 선진적인 교육기법들을 지원 받아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사.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을 실시토록 하면서 교육의 위탁,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lt;u>「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u> ① 국가 및 지방자 기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3조6)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18조제3항7)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한 조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장에게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항에 대해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문인력의 교육 능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교육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 라 사료됨.
- 다만,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인력양성을 의뢰할 경우 사업목표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신청기 관의 사업 수행기반 및 수행능력,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기반연 구 활용계획 및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하여

^{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3조(안전교육) ①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7) &}lt;u>「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고의 교육기관을 선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 부칙안 관련

- 부칙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2조, 제53조, 제54조, 56조제5항을 삭제토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2조와 제56조제5 항은 앞서 언급(본문 '마'항 참조)한 바와 같이 안전문화 활동에 관 한 사항은 기존의 상위법령 및 조례와의 동일한 체계 유지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제54조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가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 들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과정8)에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 본 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제54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⁸⁾ 재난안전관리자과정, 재난안전신규자과정, 안전점검실무과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등

[표 8]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	제조(다른 조례의 개성)
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	<u><삭 제></u>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안전 교육이 분리되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제정·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맞추는 한편,
-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들의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 겨짐.